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5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2월 5일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유 영 명

나. 제안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 11531호, '12.12.11개정, '13.12.12시행)됨에 따라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조정하고,
-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행안부, '11.9.30)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보강의 일환으로 '14년도 사회복지직 채용을 위해 정원을 증원코자 함

다. 주요내용

- '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분 증원에 따른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1,607명 → 1,610명(+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579명 → 1,582명(+3명)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정할 때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에서 기능직을 삭제(안 별표1)

구 분	일 반 직	별 정직 · 정 무 직
비율	99%이상	1%이내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안 별표2)

- 기능직이 폐지되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별정직 중 비서인력을 제외하고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하고 기능직 정원채정기준을 삭제

【일반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현 행	1%이내	7%이내	27%이내	31%이내	26%이내	8%이상	
개 정	1%이내	7%이내	23.8%이 내	28.8%이 내	26%이내	12.4%이 상	1%이내
조 정			△3.2%	△2.2%		+4.4%	+1%

- 별정직 중 비서인력을 제외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

【별정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행		50%이내	50%이상		
개정		100%이내			

○ 직종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일반직 : 1,315명 → 1,572명(+257명)
 - 5급이상 : 변동없음
 - 6급이하 : 1,225명 → 1,472명(+247명)
 - 사회복지직 순증 : 3명(+3명)
 - *기능직 243명 → 일반직 : 243명(+243명)
 - *별정직(레크레이션 지도사) → 일반직 : 1명(+1명)
 - 별정직 → 전문경력관 나군 : 10명(+10명)
- 별정직 : 12명 → 1명(△11명)
- 기능직 : 삭제(△243명)

라.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1531호, '12.12.11개정, '13.12.12시행)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성 애

○ 본 조례안은

-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됨에 따라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조정하고,
-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보강의 일환으로 '14년도 사회복지직 채용을 위해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으로는

- 사회복지직 순증분 증원에 따른 정원의 총수는 1,607명에서 1,610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정할 때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하며
-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에서 기능직을 삭제,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됨에 따라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조정하고,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보강의 일환으로 '14년도 사회복지직 채용을 위해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